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가단33089 판결 [구상금 청구의 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30 선고 2020나76083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19가단33089 판결

전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기풍

담당변호사 송명근

피 고 1. B 주식회사

2. C

변론종결 2020. 7. 10.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63,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2.부터 2019. 8. 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C은 2018. 4. 10.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2018. 4. 12. 등기), 2018. 10. 23. 사임하였다(2018. 10. 25. 등기).

나. 피고 회사는 2018. 5. 4. D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가 물품을 발주하면 소외 회사가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는 2018. 5. 2.경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소외 회사, 주계약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보험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여 외상물품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2018. 5. 3.경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하여 이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라. 이후 소외 회사는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2019. 2.분 내지 2019. 4.분까지의 대금 합계 48,726,732원 및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 237,174원 합계 48,963,906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줄 것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9. 6. 21. 소외

회사에게 48,963,90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피고 회사: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48,963,906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963,906원 및 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 2019. 6. 22.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종 송달일인 2019. 8. 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은, 2019. 4. 24. 원고 등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여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의 귀책사유를 들어 법률적 검토와 보험금 지급의 기각을 요청하였는데, 원고는 신중한 법적 검토 없이 소외 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였는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와 같은 피고 C의 주장만으로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피고 C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 체결사실을 인지하거나 동의 또는 자필서명 등 날인한 사실이 없고, 대리인을 통하여 계약의 체결을 위임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적법하게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진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는 피고 회사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고, 피고 C은 피고 회사 인영의 진정 여부에 관하여는 다투지 아니한 채 위와 같이 이 사건 물품계약 체결사실을 인지하거나 동의 또는 날인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피고 C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C의 주장과 같이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피고 C이 아닌 제3자가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에 피고 회사의 인영을 날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피고 C은,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서상 피고 회사의 대표자가 ‘피고 C’이 아닌 ‘E’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이와 같이 명칭이 잘못 기재된 문서에 의한 연대보증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서의 ‘보험계약자 정보’란의 ‘성명(대표자명)’란에 ‘E’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은 2018. 5. 2. 11:55:54 피고 회사의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이 이루어졌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 내지 원고와 피고 C 사이의 연대보증약정이 무효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 C은, 원고와 소외 회사가 연대보증인인 피고에게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피고 회사의 구매대금 연체 등 채무불이행 사항에 관하여 연대보증인에게 통보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위반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이 주계약으로 기재되어 있는 이 사건 이행보증보험계약서 및 이행(상품판매대금)보증보험 특별약정서 등에 연대보증인으로 자필서명하였을 뿐 아니라, 피고는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와 연대보증약정을 체결한 것으로서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보증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피보험자인 소외 회사는 보험계약자인 피고 회사가 물품대금을 3개월 이상 연체하거나 변제하지 아니할 경우 위험성을 고지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연대보증인인 피고 C이 2018. 11. 21. 소외 회사의 담당 직원에게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음을 통보하여 절차진행을 요구하였음에도, 소외 회사의 담당 직원은 피고 C에게 “보증보험 별도의 변경은 필요 없다고 합니다.”라고 답변하였는바,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갑 제2,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보증보험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일 뿐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기로 약정한 것이 아니다. 또한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1826 판결 등 참조),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C이 2018. 11. 21. 소외 회사에게 이메일을 보내고, 같은 날 소외 회사측에서 피고 C에게 “보증보험 별도 변경 필요 없다고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인정될 뿐, 피고 C이 연대보증약정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연대보증약정의 해지를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 C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6) 그 밖에 피고 C이 주장하는 사정들에 의하더라도,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배척할 만한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이영은